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1 선고 2018가단6580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 주식회사(변경 전: B 주식회사)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3. 21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552,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1. 12.부터 2008. 12. 2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## **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**

(원고와 피고 사이의 "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16. 선고 2008가단414101 판결"로 확정된

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로서,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)

**판사김태업**

별지